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9.

제 출 자 : 동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맞춰 상위근거법령에 위반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(안 제2조1항1호)
 - 위촉 위원의 자격 확대(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추가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 3항
- 나. 합 의 : 별도 합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 - (2) 입법예고(2015. 7. 30 ~ 8. 19) : 별도 의견 없음
 - (3) 규제심사 :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 반영
 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 - (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. 영향평가

상위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조례에 미반영되어 배제되었던 ‘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’을 위원의 자격에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

- 가. 법조인, 교육자 등의 직업군으로 한정돼 있던 윤리위원회에 다양한 구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어 규제개선의 효과가 있고,
- 나. 공직자 재산과 청렴성을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법조인·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”를 “법조인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</p> <p>①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3명의 위원은 <u>법조인·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</u> 중에서 위촉한다</p>	<p>제2조(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3명의 위원은 <u>법조인·교육자 ,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</u> 중에서 위촉한다</p>